

## 2005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事務局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05. 5. 24.
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### 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~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, 200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字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05. 6. 21 ~ 6. 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9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### 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~ 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## 2005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議會 事務局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### 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,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200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監査期間

○ 2005. 6. 21(화) ~ 6. 27(월) [7일간]

### 3. 監査實施 對象機關

○ 마포구의회사무국

### 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분	감사위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운영위원회	[위원장] 정형기 [간사] 전완수 [위원] 박영길, 송태섭 신봉현, 오윤수 유남렬, 이매숙 정해원	마포구의회 사무국	운영 위원회실	김건재	황향선

## 5. 監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 단계	2005.5.18(수) ~ 6.4(토)	○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○감사관계 자료수합	
	5.24(화)	○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이송	
	5.25(수)	○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감사계획 통보	
	6.7(월) ~ 6.18(토)	○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 단계	2005.6.21(화) ~ 6.27(월)	○위원장의 감사선언 ○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감사종료 선언	
감치 사리 결단 과계	2005.6.28(화) ~ 7.6(수)	○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 ○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## 6. 監査要領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行政事項

- 가.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##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05. 5. 23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# 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항으로서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06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字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 (2005. 6. 21 ~ 2005. 6. 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,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(11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실 및 동사무소로 한다.

### 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~ 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##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### 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,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,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2006년도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함.

### 2. 監査期間

2005. 6. 21 (화) ~ 2005. 6. 27 (월) [7일간]

### 3. 監査實施 對象機關

- 마포구청 (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)
- 동사무소 (24개동)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

### 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행정건설 위원회	[위원장] 김 광 섭 [간 사] 박 지 위 [위 원] 김 영 식, 김 효 철, 남 두 희, 신 봉 현, 오 윤 수, 유 남 렬, 유 응 봉, 전 완 수, 정 형 기	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, 동사무소, 마포구시설 관리공단	행정건설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	박관수	조용학

## 5.監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단계	2005.5.18 (수) ~ 6. 4 (토)	○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○ 감사관계 자료수합	
	2005.5.23 (월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이송	
	2005. 5.25(수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2005.6. 7 (월) ~ 6.19 (토)	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단계	2005.6.21 (화)	○ 감사시작 선언 ○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- 동장 인사 및 소속직원소개 - 증인선서 - 동사무소 감사	감사대상 2개동 선정
	2005.6.22 (수)	○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- 감사담당관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감사담당관 감사 ○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실시 - 행정관리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총 무 과 감사 - 주민자치과 감사 - 문화체육과 감사 - 민원봉사과 감사 - 여 권 과 감사 - 재난안전관리과 감사	
	2005.6.23 (목)	○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기획재정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기획예산과 감사 - 재 무 과 감사 - 세 무 1과 감사 - 세 무 2과 감사 ○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	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실시단	2005.6.24 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</li> <li>-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소개</li> <li>- 증인선서</li> <li>- 교통행정과 감사</li> <li>- 교통지도과 감사</li> <li>- 토 목 과 감사</li> <li>- 치 수 과 감사</li> </ul>	
계	2005.6.27 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결과 강평</li> <li>○ 감사종료 선언</li> </ul>	
감치 사리 결단 과계	2005.6.28 (화) ~ 7. 6 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</li> <li>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</li> <li>○ 감사결과 보고(본회의)</li> <li>○ 감사결과 처리 및 요구사항 이송</li> </ul>	

## 6. 監査要領

감사는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, 기획재정국, 건설교통국의 각과 및 동사무소, 마포구시설관리공단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行政事項

가.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
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

## 2005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05. 5. 23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

### 1. 提案理由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의 운영실태를 파악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, 200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.

### 2. 主要骨字

-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한다.(2005. 6.21 ~ 6.27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생활복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동사무소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(12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, 동사무소,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.

### 3. 關係法規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~ 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## 2005年度 서울特別市 麻浦區 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### 1. 監査의 目的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,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·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, 200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監査期間

○ 2005. 6. 21(화) ~ 6. 27(월) [7일간]

### 3. 監査實施 對象機關

- 마포구청(생활복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)
- 동사무소(24개동)
- 마포구시설관리공단

### 4.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 위원회	[위원장] 윤 동 현 [간 사] 정 해 원 [위 원] 김 순 금, 박 영 길 송 태 섭, 신 동 선 윤 정 용, 이 매 숙 이 종 일, 이 천 규 한 대 운, 한 수 균	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 건 소 동 사 무 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	◦ 복지도시 위원회실 ◦ 동사무소 ◦ 마포구시설 관리공단	김건재	황향선

## 5. 監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단계	2005.5.18(수) ~ 6.4(토)	○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○감사관계 자료수합	
	5.23(월)	○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이송	
	5.25(수)	○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감사계획 통보	
	6.7(화) ~ 6.18(토)	○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단계	2005.6.21(화)	○위원장의 감사선언 ○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이사장 인사 및 임원 소개 - 증인선서 -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	
	2005.6.22(수)	○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생활복지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 소개 - 증인선서 - 사회복지과 감사 - 가정복지과 감사	
	2005.6.23(목)	○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지역경제과 감사 - 청소환경과 감사	
	2005.6.24(금)	○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도시관리국장 인사 및 소속간부 소개 - 증인선서 - 주택과 감사 - 도시관리과 감사 - 건축과 감사 - 지적과 감사 - 공원녹지과 감사	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실시 단계	2005. 6.27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</li> <li>- 보건소장 인사 및 소속간부 소개</li> <li>- 증인선서</li> <li>- 보건위생과 감사</li> <li>- 지역보건과 감사</li> <li>- 의약과 감사</li> </ul>	
감사 결과 처리 단계	2005. 6.28(화) ~ 7. 6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</li> <li>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</li> <li>○ 감사결과 보고(본회의)</li> <li>○ 감사결과 처리 및 요구사항 이송</li> </ul>	

## 6. 監査要領

- 감사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각과, 동사무소,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,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行政事項

-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-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